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자 원 순 환 과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추은희 의원 외 6인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추은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추은희·강승수·김영길·신용하 양진오·이명희·장미경 의원(7인)

찬 성 자: 김영태·김재우·박세채·이상호 이정희·이지연 의원(6인)

1. 제안이유

구미시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예산지원 등(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나. 부서검토: 자원순환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자원순환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포장재, 폐부직포,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3. 영농폐기물 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자원순환과

조 례 명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주요 사항

○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안 제5조)

-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 예산지원 등(안 제7조)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지원
- 영농폐기물 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수거보상비 지급 기준·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정한 절차 준용

□ 검토 결과

○ 영농폐기물 관련 예산지원(수거보상비 등)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7조제1호(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및 같은 조 제2호(집하시설)에 따른 예산지원 사항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없음

○ 안 제7조제2호(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따라 추가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비의 예상 소요예산(연간)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예상 소요예산(연간): 80백만원(200톤 × 400천원)

4.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차수정(☎054-480-5205)